

# 마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1-134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. 1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구립 도화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운영이 2022. 3. 31. 만료될 예정으로 재계약 심사 결과에 따른 재계약을 통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지속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마포구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마포청소년문화의집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### ○ 근거

-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(수련시설운영의 위탁)
-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(운영의 위탁)

### ○ 필요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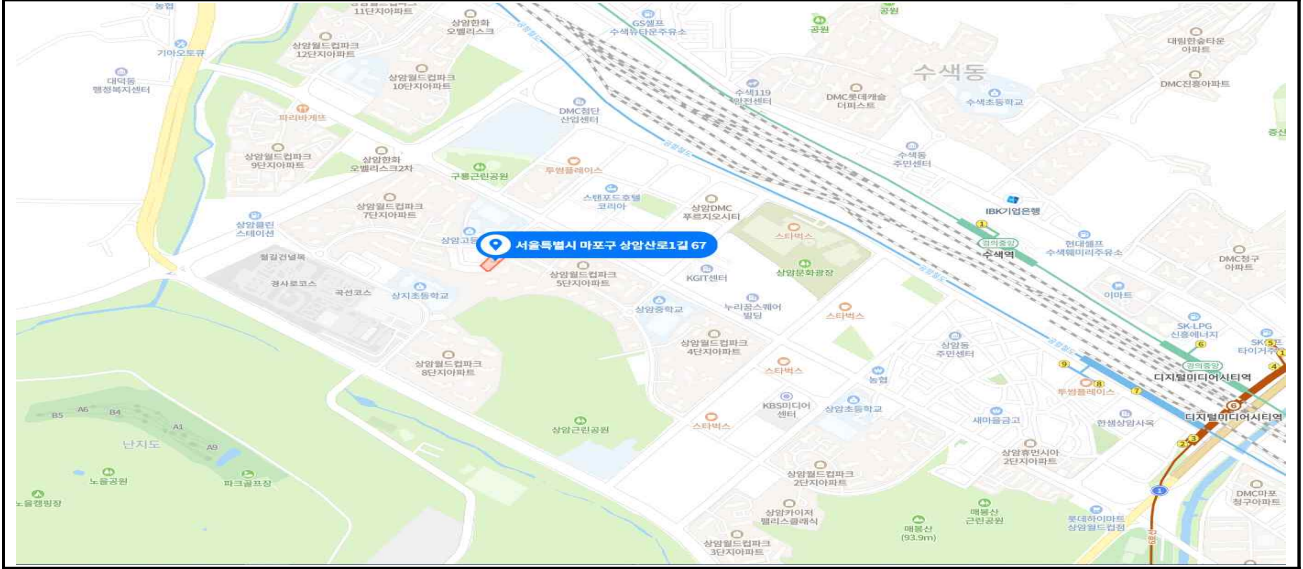
- 역량있는 단체의 운영을 통해 전문적인 청소년활동서비스 제공
- 시설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사회의 참여활성화 기여
- 중심이 되는 구립 청소년수련시설로 사업의 안전성 영속성 제고

다.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: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

라. 위탁시설 개요

위탁체	위탁기간	규모	수용인원	운영사업
(사)한국청소년 재단(관장:박선숙)	'19.4.1~'22.3.31	대지 1,463㎡, 연면적 3,687㎡ (지하1~지상5층)	500명	청소년사업 상담사업 평생교육사업

위치도 (소재지: 상암산로 1길 67)



마. 민간위탁기간 : 2022. 4. 1. ~ 2025. 3. 31.(3년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재계약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<단위:천원>

연도별	사업비용	세부내역	산출근거
총사업비	3,665,000		
2022년	1,179,000	- 인건비 : 847,000 - 운영비 : 332,000	- 서울시 청소년시설 총사 인건비 가이드라인
2023년	1,221,000	- 인건비 : 889,000 - 운영비 : 332,000	
2024년	1,265,000	- 인건비 : 933,000 - 운영비 : 332,000	

아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-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은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
- 청소년시설 운영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를 선정하여 안 정적·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청소년 활동 서비스 제공과 민간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도모

### 3. 재위탁·재계약 관련 자료

#### 가. 인적·물적 현황

- 인적현황 : 22명(관장 1, 부장 1, 팀장 4, 정규직 15, 계약직 1)
- 물적현황

구 분	취득원가(원)	감가상각누계액(원)	순액(원)
수탁자산	423,964,146	354,226,486	69,737,660

#### 나. 예산의 지원과 집행 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운영보조금	집행액	잔액	비고
2019	1,044,000	1,044,000	-	
2020	1,097,000	1,097,000	-	
2021	1,129,000	1,129,000	-	

#### 다. 위탁 조건의 이행 수준

- 특이사항 없음

#### 라.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

구 분	조치사항	조치결과	비 고
2021년 지도점검	시정 6 / 주의 5	완료 4 / 기간미도래 2	

#### 마. 사건·사고 현황

- 특이사항 없음

#### 바. 성과평가결과서

-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반영
- ※ '19년 : 최우수기관(92.4점) ' 21년 : 12월 예정

#### 사.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결과

- 2022. 1. 심의예정

## 4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
-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1항

### 나. 기타사항

- 추진일정안
  - 민간위탁운영체 성과평가(여성가족부 종합평가) : 2021.12.
  - 민간위탁운영체 재계약 방침 수립 : 2021.1.
  -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 및 협약 : 2022.1. ~ 2.

#### <청소년활동진흥법>

##### 제16조(수련시설 운영의 위탁)

-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·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(이하 “위탁운영단체”라 한다)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<전문개정 2014. 1. 21.>

#### <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>

##### 제8조(운영의 위탁)

-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20.12.31.>

#### <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>

##### 제21조(성과평가)

-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외부기관의 성과평가를 받는 경우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